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. 10. 17 선고 2018가단342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10. K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0. 17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L 답 1089m²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0. 3. 2. 접수 제38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김소영

별지